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2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문진석・이건태・박용갑

박성준 • 이정문 • 이광희

양문석 • 백혜련 • 강준현

김문수 · 장종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대안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97조의9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 |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 | | |
|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 | |
|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 대한 과세특례) ①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 | | | |
| 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 | | | |
| 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 | | | |
|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 | | |
|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 | | | |
| 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 | |
|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 | | | |
| 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 | | | |
| 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 | | |
|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 | | | |
| 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 | | | |
| <u>24년 12월 31일</u> 까지 주택 건설 | - <u>2027년 12월 31일</u> | | |
| 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 | | |
|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 | | |
| 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 | | | |
|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